

의안번호	제 2014 - 16 호
보 고	2014. 6. 9.
연 월 일	(제5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목차

١.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1
1.	사건 접수	···· 1
2.	처리 현황	·· 13
II. Ā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32
III.	양형위원 및 전문위원 개임,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가	회
		33
1.	양형위원 개임	33
2.	전문위원 개임	33
3.	신임 양형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35
4.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35
IV.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36
1.	개요	·· 36
2.	추진 경과	·· 36
٧.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7
1.	개요	·· 37
2.	추진 경과	37

VI.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범조	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분석	38
1.	개요	- 38
2.	분석 대상	- 38
3.	분석의 의의	- 38
4.	조사 및 분석 내용	- 38
VII.	2013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39
1.	개요	39
2.	수록 내용	39
3.	2013. 4. 27. ~ 2014.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요약	39
4.	향후 추진 일정	41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43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접수의견 보고	43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44

- □ 별지1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 □ 별지2 「세부범죄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 □ 별첨 관보게재용 양형기준

1.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1. 사건 접수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4. 2. 28.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제1기 대상범죄(2009. 7. 1. ~ 2014. 2. 28.)

W1 =1		2009. 7. ~	2014. 1. ~	T140
범죄	세부죄명	2013. 12.	2014. 2.	전체
	강간살인	5	0	5
	강도살인	50	10	60
	강도살인미수	19	0	19
	살인	1,361	44	1,405
	살인교사	3	0	3
	살인미수	1,876	47	1,923
살인 범죄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김지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35	0	35
	존속살해	135	2	137
	존속살해미수	67	2	69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1	0	1
	전체	3,554	105	3,659
	뇌물공여	2,423	32	2,455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2	0	2
	뇌물공여의사표시	4	0	4
	뇌물수수	1,675	37	1,712
뇌물 범죄	뇌물약속	2	0	2
	뇌물요구	2	2	4
	부정처사후수뢰	83	1	84
	수뢰후부정처사	100	2	102
	제3자뇌물교부	128	0	128
	제3자뇌물취득	136	2	138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 ~	전체
급꾀	세구되당	2013. 12.	2014. 2.	선세
	특가법(뇌물)	553	6	559
	전체	5,110	82	5,192
	강간	983	45	1,028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754	14	768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291	21	1,312
	강도강간	79	2	81
	강제추행	7,009	384	7,393
	강제추행상해	163	1	164
	강제추행치상	517	2	519
	미성년자의제강간	96	0	9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9	0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05	2	107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1	3
성	상습강제추행	7	1	8
범	상습준강제추행	3	0	3
죄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15	9	72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71	0	171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200	0	200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86	4	190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95	5	40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9	1	14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83	0	18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7	0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9	2	51
	성폭력범죄(특수강간)	490	2	492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33	3	336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2	0	52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 ~	전체
	· 11 - 13	2013. 12.	2014. 2.	L**II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24	0	124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86	4	89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510	32	54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3	1	1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71	6	7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1	0	2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41	3	44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434	17	45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438	3	44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127	7	13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56	11	16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30	3	33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99	8	10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34	3	3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20	0	20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91	16	10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4	1	5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76	2	78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996	23	1,01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61	7	268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05	17	32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8	3	3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67	1	6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044	20	1,06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02	7	309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59	7	16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443	18	46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36	2	3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3,018	43	3,06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9	1	10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 ~	전체
	· 1 1 2 0	2013. 12.	2014.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13	5	18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950	86	1,036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10	10	12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00	4	10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42	3	4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32	1	3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5	0	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191	16	207
	유사강간	32	5	37
	유사강간상해	3	1	4
	유사강간치상	6	2	8
	준강간	570	35	605
	준강간상해	3	0	3
	준강간치상	68	1	69
	준강제추행	1,036	58	1,094
	준강제추행상해	3	0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8	0	18
	준유사강간	16	5	21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27,753	997	28,750
	강도	633	8	641
	강도교사	2	0	2
	강도살인	67	0	67
	강도상해	2,774	67	2,841
강도	강도상해교사	3	0	3
범죄	강도치사	20	2	22
	강도치상	210	10	220
	준강도	351	10	361
	준특수강도	58	5	63

шті	WH TIP	2009. 7. ~	2014. 1. ~	TJ +II
범죄	세부죄명	2013. 12.	2014. 2.	전체
	특가법(강도)	36	0	36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8	0	48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2,351	48	2,399
	전체	6,555	150	6,705
	배임	2,159	49	2,208
	배임교사	1	0	1
	업무상배임	2,681	73	2,754
횡령	업무상횡령	11,214	300	11,514
	특경가법(배임)	1,346	26	1,372
배임	특경가법(배임)교사	1	0	1
범죄	특경가법(횡령)	1,863	34	1,897
	특경가법(횡령)교사	1	0	1
	횡령	10,063	294	10,357
	전체	29,329	776	30,10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5	0	5
	모해위증	83	2	85
위증	모해위증교사	2	0	2
범죄	위증	5,421	138	5,559
	위증교사	752	17	769
	전체	6,263	157	6,420
	무고	7,881	163	8,044
	무고교사	32	0	32
무고	특가법(무고)	32	0	32
범죄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7,946	163	8,109
	총계	86,510	2,430	88,940

나. 제2기 대상범죄(2011. 7. 1. ~ 2014. 2. 28.)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 ~	전체
	게무늬ㅇ	2013. 12.	2014. 2.	근제
	간음약취	3	0	3
	간음유인	3	2	5
	미성년자약취	35	5	40
	미성년자유인	27	0	27
약취	영리약취	6	1	7
· 유인	영리유인	14	0	14
H 전 범죄	추행유인	4	0	4
	특가법(약취·유인)	23	1	24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8	1	59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1	0	1
	전체	174	10	184
	사기	90,307	5,428	95,735
	사기교사	5	0	5
	상습사기	348	11	359
사기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0	2
범죄	준사기	44	2	46
	컴퓨터등사용사기	1,040	75	1,115
	특경가법(사기)	2,181	124	2,305
	전체	93,927	5,640	99,567
	문화재보호법위반	77	1	78
	산림보호법위반	126	2	12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528	31	559
	상습절도	4	0	4
	상습특수절도	2	0	2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390	68	1,458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3	0	3
	야간방실침입절도	139	3	142
	야간선박침입절도	4	0	4
	야간주거침입절도	913	36	949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16,872	951	17,823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 ~	전체
	절도교사	2013. 12. 51	2014. 2.	51
	 투가법(산림)	88	16	104
	특가법(절도)	5,358	254	5,612
	<u> </u>	8,693	343	9,036
	 특수절도교사	20	5	25
	 전체	34,269	1,710	35,979
	전세 공문서변조	228	8	236
		2	0	230
	공문서변조교사	970	32	
	공문서부정행사	970	0	1,002 9
	공문서부정행사교사			
	공문서위조	782	38	820
	공문서위조교사	5	0	5
	공전자기록등변작	1	0	1
쟝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174	78	1,252
8 문	공전자기록등위작	34	1	35
서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424	16	440
죄	변조공문서행사	17	0	17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74	2	76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30	3	33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83	7	90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112	7	119
	허위작성공문서행사	9	0	9
	전체	3,959	192	4,151
사	변조사문서행사	157	7	164
문	사도화위조	2	0	2
서	사문서변조	168	9	177
범	사문서부정행사	10	0	10
죄	사문서위조	3,558	213	3,77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 ~	전체
	사문서위조교사	2013. 12.	2014. 2.	15
	사전자기록등변작	10	0	10
	사전자기록등위작	49	1	50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3	0	3
	위조사문서행사	260	4	26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44	5	149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0	0	10
	허위작성진단서행사	6	0	6
	허위진단서작성	32	0	32
	허위진단서작성교사	2	0	2
	전체	4,426	241	4,667
		12,356	626	12,982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363	60	1,423
	공용물건은닉	5	0	5
공무	공용서류무효	30	1	31
oㅜ 집행	공용서류손상	122	7	129
방해	공용서류은닉	10	0	10
범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4	0	4
	위계공무집행방해	619	30	649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2	0	2
	특수공무집행방해	758	47	8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22	11	433
	특수공용물건손상	25	1	26
	전체	15,723	783	16,506
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40	16	356
.	<u>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u>	16	0	16
보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486	114	1,600

шт	III M TIPE	2011. 7. ~	2014. 1. ~	7141
범죄	세부죄명	2013. 12.	2014. 2.	전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4	1	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31	0	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720	33	7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1	0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21	0	21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3,838	313	4,151
ᄪᆩ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0	3
범죄	약사법위반	904	33	937
	의료법위반	1,955	88	2,043
	의료법위반교사	3	2	5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5	0	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463	72	53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58	1	59
	전체	9,852	673	10,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431	74	1,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12	14	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8,164	360	8,524
마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960	23	983
범죄	특가법(마약)	2	0	2
	특가법(향정)	30	1	31
	전체	10,699	472	11,171
	총계	173,029	9,721	182,750

다. 제3기 대상범죄(2012. 7. 1. ~ 2014. 2. 28.)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469	48	517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36	8	44
금융	증권거래법위반	67	4	7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특경가법(수재등)	62	11	73
l	특경가법(알선수재)	170	9	179
범죄	특경가법(증재등)	50	9	59
	전체	854	89	943
	디자인보호법위반	37	7	4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3	0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36	3	139
지식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0	1	11
재산	상표법위반	1,342	103	1,445
범죄	실용신안법위반	11	2	13
	저작권법위반	991	92	1,083
	특허법위반	26	2	28
	전체	2,556	210	2,766
	상습존속폭행	1	0	1
	상습폭행	4	0	4
	상해	24,427	2,384	26,811
	상해교사	4	0	4
	상해치사	143	16	159
	존속상해	153	5	158
	존속상해치사	10	3	13
	존속중상해	2	0	2
폭력	존속폭행	51	3	54
범죄	존속폭행치사	3	0	3
	존속폭행치상	3	0	3
	존속협박	11	1	12
	중상해	80	3	83
	특가법(보복범죄등)	45	0	45
	특가법(보복상해등)	38	6	44
	특가법(보복폭행등)	39	3	42
	특가법(보복협박등)	72	16	88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168	144	1,312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 ~	전체
	"1-10	2013. 12.	2014. 2.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102	4	106
	특수폭행치사	1	0	1
	특수폭행치상	5	0	5
	특수협박	137	9	146
	폭처법(공동상해)	6,265	584	6,849
	폭처법(공동상해)교사	2	0	2
	폭처법(공동존속상해)	10	0	10
	폭처법(공동폭행)	1,474	173	1,647
	폭처법(공동폭행)교사	5	1	6
	폭처법(공동협박)	184	15	199
	폭처법(공동협박)교사	1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4	0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7	0	7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9	1	10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상해)	1	0	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흉기등폭행)	1	0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27	0	27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11	0	1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	11	0	11
	폭처법(상습상해)	143	5	148
	폭처법(상습존속상해)	6	0	6
	폭처법(상습존속폭행)	7	0	7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상해)	6	0	6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폭행)	2	0	2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협박)	5	0	5
	폭처법(상습폭행)	108	4	112
	폭처법(상습협박)	17	0	17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 ~	전체
ㅁᅬ	세구되る	2013. 12.	2014. 2.	교세
	폭처법(야간·공동상해)	19	5	24
	폭처법(야간·공동폭행)	0	1	1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	8,435	672	9,107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교사	9	1	10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상해)	44	1	45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폭행)	8	0	8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협박)	22	1	23
	폭처법(집단·흉기등폭행)	1,869	145	2,014
	폭처법(집단·흉기등폭행)교사	2	0	2
	폭처법(집단·흉기등협박)	2,301	179	2,480
	폭행	9,774	1,102	10,876
	폭행치사	123	8	131
	폭행치상	322	38	360
	협박	1,342	140	1,482
	협박교사	2	0	2
	전체	59,081	5,673	64,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386	1,730	18,116
	특가법(도주차량)	7,805	689	8,494
교통 범죄	특가법(도주차량)교사	1	0	1
급꾀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5,069	433	5,502
	전체	29,261	2,852	32,113
	공직선거법위반	986	16	1,002
선거 범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4	0	4
급꾀	전체	990	16	1,006
	조세범처벌법위반	780	217	997
	지방세기본법위반	6	1	7
조세	특가법(조세)	45	13	58
범죄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56	33	189
	전체	987	264	1,251
공갈	공갈	207	53	260
범죄	특경가법(공갈)	5	0	5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폭처법(공동공갈)	267	73	340
	폭처법(공동공갈)교사	2	0	2
	폭처법(상습공갈)	7	2	9
	폭처법(야간·공동공갈)	1	0	1
	폭처법(집단·흉기등공갈)	9	9	18
	전체	498	137	635
	공용건조물방화	1	2	3
	공용자동차방화	1	0	1
	일반건조물방화	26	6	32
	일반물건방화	21	5	26
	일반자동차방화	21	3	24
방화	현존건조물방화	11	2	13
범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0	2	2
	현존자동차방화치사	0	1	1
	현주건조물방화	86	15	10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	0	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10	0	10
	전체	180	36	216
	총계	94,407	9,277	103,684

-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 준이 적용될 사건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2. 처리 현황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로서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되어 2014. 2. 28.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4. 2. 28.)

+1 =1 =1 =1	버지그		사건 구분		TJ+II	
처리기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110111171	수	3,170	2	0	3,172
	살인범죄	비율	99.9%	0.1%	0.0%	100.0%
		수	2,263	1,431	75	3,769
	뇌물범죄	비율	60.0%	38.0%	2.0%	100.0%
	H H T	수	16,469	3,481	1,748	21,698
	성범죄	비율	75.9%	16.0%	8.1%	100.0%
	그녀는 뭐 되	수	5,709	38	0	5,747
2009. 7. ~	강도범죄	비율	99.3%	0.7%	0.0%	100.0%
2013. 12.	취건 메이티카	수	3,721	16,531	4,617	24,869
	횡령·배임범죄	비율	15.0%	66.5%	18.6%	100.0%
	이즈비키	수	114	4,264	1,070	5,448
	위증범죄	비율	2.1%	78.3%	19.6%	100.0%
	무고범죄	수	223	4,788	1,516	6,527
		비율	3.4%	73.4%	23.2%	100.0%
	전체	수	31,669	30,535	9,026	71,230
		비율	44.5%	42.9%	12.7%	100.0%
	사이버지	수	130	1	0	131
	살인범죄	비율	99.2%	0.8%	0.0%	100.0%
	110 11 11	수	101	41	1	143
	뇌물범죄	비율	70.6%	28.7%	0.7%	100.0%
	서버지	수	780	543	60	1,383
2014. 1. ~	성범죄	비율	56.4%	39.3%	4.3%	100.0%
2014. 2.	71 - 41 -1	수	169	1	0	170
	강도범죄	비율	99.4%	0.6%	0.0%	100.0%
	취거베이비키	수	164	657	183	1,004
	횡령·배임범죄	비율	16.3%	65.4%	18.2%	100.0%
	이즈비키	수	1	139	59	199
	위증범죄	비율	0.5%	69.8%	29.6%	100.0%

+1717171	нло			TJ +II		
시티기산	처리기간 범죄군		고단	고정	전체	
		수	10	190	53	253
	무고범죄	비율	4.0%	75.1%	20.9%	100.0%
	전체	수	1,355	1,572	356	3,283
		비율	41.3%	47.9%	10.8%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4. 2. 28.)

+1 =1 =1 =1	HNI			사건 구분		TJ +JI
처리기간	처리기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Ot+1 O O H +1	수	141	46	0	187
	약취·유인범죄	비율	75.4%	24.6%	0.0%	100.0%
	니기버지	수	4,504	52,742	16,603	73,849
	사기범죄	비율	6.1%	71.4%	22.5%	100.0%
	저도버지	수	3,136	22,393	5,536	31,065
	절도범죄	비율	10.1%	72.1%	17.8%	100.0%
	L L L	수	216	1,820	852	2,888
	공문서범죄	비율	7.5%	63.0%	29.5%	100.0%
2011. 7. ~	사문서범죄	수	193	2,528	1,289	4,010
2013. 12.		비율	4.8%	63.0%	32.1%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820	6,392	5,747	12,959
		비율	6.3%	49.3%	44.3%	100.0%
	식품·보건범죄	수	204	2,244	5,366	7,814
		비율	2.6%	28.7%	68.7%	100.0%
	미야버지	수	1,342	7,870	159	9,371
	마약범죄	비율	14.3%	84.0%	1.7%	100.0%
	다다	수	10,556	96,035	35,552	142,143
	전체	비율	7.4%	67.6%	25.0%	100.0%
	아치 오이버지	수	6	6	0	12
2014. 1. ~	약취·유인범죄	비율	50.0%	50.0%	0.0%	100.0%
2014. 2.	니기버지	수	432	5,517	1,154	7,103
	사기범죄	비율	6.1%	77.7%	16.2%	100.0%

+1717171	нта	нлл		사건 구분		TJ +II
처리기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저도버귀	수	215	1,475	401	2,091
	절도범죄	비율	10.3%	70.5%	19.2%	100.0%
	고무니버지	수	7	157	51	215
	공문서범죄	비율	3.3%	73.0%	23.7%	100.0%
	니무니버지	수	9	247	79	335
	사문서범죄	비율	2.7%	73.7%	23.6%	100.0%
	고디지쳀바베버지	수	65	435	326	826
	공무집행방해범죄	비율	7.9%	52.7%	39.5%	100.0%
	시프니키비키	수	15	274	443	732
	식품·보건범죄	비율	2.0%	37.4%	60.5%	100.0%
	미아버지	수	106	509	14	629
	마약범죄	비율	16.9%	80.9%	2.2%	100.0%
	TJ +II	수	855	8,620	2,468	11,943
	전체	비율	7.2%	72.2%	20.7%	100.0%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4. 2. 28.)

+1 =1 =1 =1	버지그			사건 구분		전체
처리기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선세
	ᄌ기ᄀᄋᄖᅱ	수	178	212	44	434
	증권·금융범죄	비율	41.0%	48.8%	10.1%	100.0%
	구나 시 게 나 나 무	수	5	732	1,305	2,042
	지식재산범죄	비율	0.2%	35.8%	63.9%	100.0%
	폭력범죄	수	2,256	22,434	23,442	48,132
2012. 7. ~		비율	4.7%	46.6%	48.7%	100.0%
2013. 12.	교통범죄	수	1,433	15,821	7,585	24,839
		비율	5.8%	63.7%	30.5%	100.0%
	선거범죄	수	852	37	0	889
		비율	95.8%	4.2%	0.0%	100.0%
	구 내 내 귀	수	23	169	105	297
	조세범죄	비율	7.7%	56.9%	35.4%	100.0%

+1717171	WII			사건 구분		TJ +II
처리기간	범죄군		고합	고단	고정	전체
	고기비리	수	23	174	39	236
	공갈범죄	비율	9.7%	73.7%	16.5%	100.0%
	ul÷lW ᅱ	수	106	4	0	110
	방화범죄	비율	96.4%	3.6%	0.0%	100.0%
	TJ +II	수	4,876	39,583	32,520	76,979
	전체	비율	6.3%	51.4%	42.2%	100.0%
	ᄌᄁᄀᄋᄥᅱ	수	41	50	6	97
	증권·금융범죄	비율	42.3%	51.5%	6.2%	100.0%
	T1 11 T11 11 H41 T1	수	0	113	144	257
	지식재산범죄	비율	0.0%	44.0%	56.0%	100.0%
	폭력범죄	수	268	3,110	2,468	5,846
		비율	4.6%	53.2%	42.2%	100.0%
	교통범죄	수	19	1,944	718	2,681
		비율	0.7%	72.5%	26.8%	100.0%
2014. 1. ~	ㅂ기버지	수	35	2	0	37
2014. 2.	선거범죄	비율	94.6%	5.4%	0.0%	100.0%
	ᅎᄱᄡᄭ	수	48	96	61	205
	조세범죄	비율	23.4%	46.8%	29.8%	100.0%
	고사비지	수	8	100	14	122
	공갈범죄	비율	6.6%	82.0%	11.5%	100.0%
	ᄔᅜᆡᄔ	수	48	0	0	48
	방화범죄	비율	100.0%	0.0%	0.0%	100.0%
	TI +II	수	467	5,415	3,411	9,293
	전체	비율	5.0%	58.3%	36.7%	100.0%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09. 7. 1. ~ 2014. 2. 28.)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강간살인	4	0	4
-	강도살인	32	6	38
	강도살인미수	22	1	23
	살인	1,222	59	1,281
	살인교사	3	0	3
	살인미수	1,680	57	1,737
	살인미수교사	2	0	2
살인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범죄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4	1	25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117	5	122
	존속살해미수	59	2	61
	특가법(보복범죄등)	2	0	2
	특가법(보복살인등)	1	0	1
	폭처법(단체등의살인)	2	0	2
	전체	3,172	131	3,303
	뇌물공여	1,766	68	1,834
	뇌물공여교사	3	0	3
	뇌물수수	1,178	39	1,217
	뇌물요구	1	0	1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65	1	66
범죄	수뢰후부정처사	85	2	87
	제3자뇌물교부	96	3	99
	제3자뇌물취득	105	4	109
	특가법(뇌물)	470	26	496
	전체	3,769	143	3,912
	강간	676	42	718
성	강간살인	3	0	3
범	강간상해	688	15	703
죄	강간치사	7	0	7
	강간치상	1,115	28	1,143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강도강간	70	2	72
	강제추행	4,611	547	5,158
	강제추행상해	172	4	176
	강제추행치상	484	11	495
	미성년자간음	6	1	7
	미성년자의제강간	75	5	8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0	0	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6	2	6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1	0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	2	2
	미성년자추행	1	0	1
	상습강제추행	3	0	3
	상습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25	16	64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1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54	1	155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59	2	161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강간)	0	1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66	1	167
	성폭력범죄(장애인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1	0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68	2	37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9	5	124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44	2	14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5	1	1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2	0	32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64	0	364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20	0	320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40	0	40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04	14	818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381	55	43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4	2	16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54	9	63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7	4	2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32	9	4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유사성행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369	14	38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361	13	374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89	13	10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114	11	125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86	6	29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83	9	9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24	3	2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13	3	1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57	12	6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4	0	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66	1	67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886	48	934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17	10	22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67	15	282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31	1	3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8	7	65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793	29	82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307	4	31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30	1	13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292	25	31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29	2	31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0	1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4	0	4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위계등간음)	10	0	10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위계등추행)	2	0	2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2	0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700	66	2,766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8	1	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6	3	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729	94	82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105	18	12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83	16	99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31	3	3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33	2	3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위계등추행)	1	0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3	1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162	33	19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1	0	1
	유사강간	9	8	17
	유사강간상해	1	0	1
	유사강간치상	2	1	3
	준강간	381	41	422
	준강간상해	3	0	3
	준강간치상	59	4	63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 ~	전체
	 준강제추행	2013. 12. 720	2014. 2. 75	795
	 준강제추행상해	3	0	3
	군강제구성성의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6	1	17
	준유사강간	8	5	13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87	0	187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21,698	1,383	23,081
		575	16	591
	 강도교사	1	0	1
		63	0	63
		2,266	56	2,322
	강도상해교사	2	0	2
	강도치사	29	0	29
강도	강도치상	187	3	190
범죄	준강도	333	11	344
	준특수강도	53	0	53
	특가법(강도)	42	1	43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51	0	51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2,144	83	2,227
	전체	5,747	170	5,917
	배임	1,823	61	1,884
	배임교사	2	1	3
횡령·	업무상배임	1,910	109	2,019
배임	업무상배임교사	0	1	1
범죄	업무상횡령	9,662	387	10,049
	특경가법(배임)	1,081	43	1,124
	특경가법(횡령)	1,688	79	1,767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4. 1. ~	전체
	भारत्र	2013. 12.	2014. 2.	L'11
	횡령	8,702	323	9,025
	횡령교사	1	0	1
	전체	24,869	1,004	25,873
	모해위증	70	5	75
0.7	모해위증교사	1	1	2
위증 범죄	위증	4,610	160	4,770
	위증교사	767	33	800
	전체	5,448	199	5,647
	무고	6,466	249	6,715
	무고교사	28	3	31
무고 범죄	특가법(무고)	32	1	33
급기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6,527	253	6,780
	총계	71,230	3,283	74,513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1. 7. 1. ~ 2014. 2. 28.)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 ~	전체
금피	세구의당	2013. 12.	2014. 2.	선세
	간음약취	2	0	2
	간음유인	4	0	4
	미성년자약취	31	3	34
약취	미성년자유인	28	2	30
	영리약취	4	1	5
유인	영리유인	8	4	12
범죄	추행유인	3	0	3
	특가법(약취·유인)	22	1	23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85	1	86
	전체	187	12	199
1171	사기	70,461	6,672	77,133
사기 범죄	사기교사	6	0	6
	상습사기	305	25	330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0	2
	준사기	37	2	39
	컴퓨터등사용사기	1,122	200	1,322
	특경가법(사기)	1,916	204	2,120
	전체	73,849	7,103	80,952
	문화재보호법위반	59	2	61
	산림보호법위반	96	2	9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389	34	423
	상습절도	8	0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222	78	1,3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0	2
	야간방실침입절도	138	5	143
	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909	67	976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14,215	973	15,188
	절도교사	41	3	44
	특가법(산림)	65	2	67
	특가법(상습절도)	3	0	3
	특가법(절도)	5,318	358	5,676
	특수절도	8,582	564	9,146
	특수절도교사	15	3	18
	전체	31,065	2,091	33,156
	공도화변조	1	0	1
	공문서변조	196	9	205
공	공문서변조교사	2	0	2
문 서	공문서부정행사	527	25	552
시 범	공문서부정행사교사	6	0	6
_ _ 죄	공문서위조	607	58	665
	공문서위조교사	4	0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023	85	1,108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26	1	27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1	0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320	17	337
	변조공문서행사	4	2	6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5	0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4	1	5
	위조공문서행사	50	9	59
	허위공문서작성	108	8	116
	허위공문서작성교사	1	0	1
	허위공문서행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0	1
	전체	2,888	215	3,103
	변조사문서행사	16	1	17
	사문서변조	216	25	241
	사문서부정행사	6	0	6
	사문서위조	3,447	284	3,731
	사문서위조교사	11	0	11
	사문서위조행사	1	0	1
사	사전자기록등변작	7	0	7
문	사전자기록등위작	39	3	42
서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2
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0	1
죄	위조사문서행사	111	13	124
	위조사서명행사	2	0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24	7	131
	허위작성진단서행사	2	0	2
	허위진단서작성	24	1	25
	허위진단서작성교사	1	1	2
	전체	4,010	335	4,345
공무	공무집행방해	9,879	592	10,47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4. 1. ~	전체
	고디지체바다	2013. 12.	2014. 2.	1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물손상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1,272	69	1,341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4	0	4
지해	공용서류무효	26	1	27
집행 방해	공용서류손상	107	5	112
범죄	공용서류은닉	9	1	10
	공용전자기록등손상	1	0	1
	위계공무집행방해	528	52	580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2	0	2
	특수공무집행방해	670	57	7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24	49	473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 건손상	26	0	26
	전체	12,959	826	13,78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13	47	26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307	103	1,410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4	0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17	6	23
식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594	51	645
u 7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3	1	14
보건 범죄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1	2
ㅁ쒸	식품위생법위반	3,115	304	3,419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0	3
	약사법위반	698	41	739
	의료법위반	1,495	109	1,604
	의료법위반교사	5	0	5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0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82	65	34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1	0	1
	화장품법위반	52	4	56
	전체	7,814	732	8,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138	69	1,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89	11	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7,240	515	7,755
마약 범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885	30	915
	특가법(마약)	2	1	3
	특가법(향정)	17	3	20
	전체	9,371	629	10,000
	총계	142,143	11,943	154,086

(3)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2012. 7. 1. ~ 2014. 2. 28.)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17	58	33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7	3	13
증권	증권거래법위반	45	3	51
금융	특경가법(수재등)	31	6	43
범죄	특경가법(알선수재)	104	17	138
	특경가법(증재등)	30	10	50
	전체	434	97	628
	디자인보호법위반	22	7	3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36	13	62
지식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0	1
재산	상표법위반	1,169	142	1,453
범죄	실용신안법위반	6	1	8
	저작권법위반	793	92	977
	특허법위반	15	2	19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 ~	전체
		2013. 12.	2014. 2.	
	전체	2,042	257	2,556
	상습폭행	3	0	3
	상습협박	1	0	1
	상해	19,241	2,285	23,811
	상해교사	2	2	6
	상해치사	123	18	159
	존속상해	155	11	177
	존속상해치사	11	0	11
	존속중상해	3	0	3
	존속폭행	40	5	50
	존속폭행치사	2	1	4
	존속폭행치상	5	0	5
	존속협박	7	0	7
	중상해	62	6	74
	집단·흉기등폭행	1	0	1
폭력	특가법(보복범죄등)	159	5	169
범죄	특가법(보복상해등)	26	12	50
	특가법(보복폭행등)	32	7	46
	특가법(보복협박등)	59	14	87
	특가법(운전자폭행등)	1,089	119	1,327
	특가법(협박)	1	0	1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93	10	113
	특수폭행치상	2	0	2
	특수협박	118	8	134
	폭처법(공동감금)	1	0	1
	폭처법(공동상해)	5,262	646	6,554
	폭처법(공동상해)교사	3	0	3
	폭처법(공동존속상해)	9	0	9
	폭처법(공동폭행)	1,228	154	1,536
	폭처법(공동폭행)교사	4	1	6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폭처법(공동협박)	145	17	179
	폭처법(공동협박)교사	0	1	2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3	1	5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3	0	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4	0	4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23	4	3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7	1	9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	8	0	8
	폭처법(보복협박등)	1	0	1
	폭처법(상습상해)	122	16	154
	폭처법(상습존속상해)	3	1	5
	폭처법(상습존속폭행)	9	1	11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상해)	6	1	8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	2	0	2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폭행)	5	0	5
	폭처법(상습집단·흉기등협박)	5	0	5
	폭처법(상습폭행)	85	11	107
	폭처법(상습협박)	17	2	21
	폭처법(야간·공동상해)	14	4	22
	폭처법(야간·공동협박)	1	0	1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	7,190	902	8,994
	폭처법(집단·흉기등상해)교사	5	0	5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상해)	45	7	59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폭행)	14	0	14
	폭처법(집단·흉기등존속협박)	28	1	30
	폭처법(집단·흉기등폭행)	1,552	214	1,980
	폭처법(집단·흉기등폭행)교사	1	0	1
	폭처법(집단·흉기등협박)	2,220	301	2,822
	폭처법(흉기등상해)	11	0	11
	폭처법(흉기등협박)	8	0	8
	폭행	7,387	891	9,169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2.	2014. 1. ~ 2014. 2.	전체	
	폭행교사	3	0	3	
	폭행치사	101	10	121	
	폭행치상	283	42	367	
	협박	1,077	114	1,305	
	협박교사	1	0	1	
	전체	48,132	5,846	59,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3,830	1,540	16,910	
	특가법(도주차량)	6,560	707	7,974	
교통 범죄	특가법(도주차량)교사	1	0	1	
임죄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4,448	434	5,316	
	전체	24,839	2,681	30,201	
선거	공직선거법위반	884	37	95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5	0	5	
범죄	전체	889	37	963	
	조세범처벌법위반	290	169	628	
조세	특가법(조세)	7	6	19	
범죄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0	30	60	
	전체	297	205	707	
	공갈	89	51	191	
	특경가법(공갈)	1	1	3	
	폭처법(공동공갈)	132	59	250	
공갈	폭처법(공동공갈)교사	0	1	2	
범죄	폭처법(상습공갈)	6	5	16	
	폭처법(집단·흉기등공갈)	8	5	18	
	전체	236	122	480	
방화 범죄	공용건조물방화	0	1	2	
	공용자동차방화	2	0	2	
	일반건조물방화	13	5	24	
	일반물건방화	13	7	27	
	일반자동차방화	12	7	27	
	현존건조물방화	7	1	9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4. 1. ~	전체
		2013. 12.	2014. 2.	
	현존건조물방화치사	1	0	1
	현주건조물방화	57	21	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2	1	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3	3	9
	전체	110	48	206
	총계	76,979	9,293	77,272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제80차	2014. 5. 12. 16:00	○ 게임물, 장물·손괴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
전체회의	제81차	2014. 5. 26. 15:00	○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신용·업무· 경매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

III. 양형위원 및 전문위원 개임,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양형위원 개임

- 2014. 4. 23.자로 여상훈 위원 사임서 제출
- 2014. 4. 30.자로 여상훈 위원 해임
- 2014. 4. 30.자로 김용대 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
- ※ 신임 양형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기재 참조

2. 전문위원 개임

가. 개요

- 2014. 4. 10.자로 구회근 수석전문위원, 2014. 4. 21.자로 함석천 전 문위원 각 사임서 제출, 2014. 5. 15.자로 강수진, 노수환, 이진국 전 문위원 각 임기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 원으로 지명한다.

나.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4기 후반 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 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 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다. 위촉 내역

(1) 신규 위촉

- 이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수석전문위원, 2014. 4. 23.자)
- 황병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2014. 4. 23.자)
- ※ 신임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 참조

(2) 연임 위촉

-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4. 5. 16.자)
-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4. 5. 16.자)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4. 5. 16.자)

라. 진행 경과

- 2014. 4. 10.자로 구회근 수석전문위원 사임서 제출
- 2014. 4. 21.자로 함석천 전문위원 사임서 제출

- 2014. 5. 15.자로 강수진, 노수환, 이진국 전문위원 임기만료
- 2014. 4. 22., 2014. 5. 9. 각 위원장 결재
- 2014. 4. 23.자로 이재권 수석전문위원 및 황병헌 전문위원 신규 위촉, 2014. 5. 16.자로 강수진, 노수환, 이진국 전문위원 연임 위촉

3. 신임 양형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2014. 6. 9.(월) 15:30

○ 장 소 : 대법원 본관 11층 소접견실

○ 참석범위 : 대법원장, 위원장, 상임위원, 비서실장

○ 임명대상자 : 김용대 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 신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2014. 6. 9.(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이재권 수석전문위원, 황병헌 전문위원

IV.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 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55차 회의에서 의결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하였음

2. 추진 경과

- 2014. 3. 31. 양형위원회 제55차 회의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14. 4. 7. ~ 4. 10. : 관보 게재용 파일 편집
- 2014. 4. 16. :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 공문 시행
- 2014. 4. 22.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 게재 (http://gwanbo.korea.go.kr)
- 관보 게재용 양형기준은 별첨 자료와 같음

V.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양형기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양형기준 개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최종 의결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 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하 고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는 외에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 완료

2. 추진 경과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의뢰 : 2014. 4. 28.(법원행정처 전산정보 관리국)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완료 : 2014. 5. 30.

VI.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결과 분석

1. 개요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제4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범죄에 대하여 판결 문 및 형사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 으로 위 각 범죄의 처리현황, 선고내역 및 형량분포, 양형인자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

2. 분석 대상

○ 2009. 1. 1. ~ 2013. 12. 31. 사이에 선고된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범죄의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 사건(1심) 2,908건

3. 분석의 의의

- 양형기준 연구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
 -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범죄의 범죄유형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4. 조사 및 분석 내용

- 세부 조사 내역은 [별지2] 「세부범죄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 황」과 같음
- 분석 내용은 별책 「제4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Ⅱ(권리행사방해, 게임물 관련, 장물·손괴,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범죄)」 기재와 같음

VII. 2013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1. 개요

○ 2014. 3. 31. 양형위원회 제55차 회의에서 '2013년도 연간보고서 발 간계획안 확정의 건'(의안번호 제2014-14호)이 의결됨에 따라 운영 지원단은 2013 연간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임

2. 수록 내용

○ 2013. 4. 27. ~ 2014. 4. 26.까지의 제4기 양형위원회 활동 및2014년도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3. 2013. 4. 27. ~ 2014. 4. 26.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요약 가. 양형위원회 회의(7회)

차 수	일 시	안 건	
49차	13. 5. 7.	4기 위원회 출범식위원회 현황 및 양형기준 설정경과 보고	
50차	13. 6. 24.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의결	
51차	13. 9. 9.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심의	
52차	13. 10. 25.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결과 분석 보고 	
53차	13. 12. 23.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 	

차수	일 시	안 건	
		의결	
54차	14. 1. 20.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 수정안 의결 	
55차	14. 3. 30.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심의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나. 전문위원회의(12회)

차 수	일 시	안 건	
68차	13. 5. 20.	■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	
69차	13. 6. 3.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제4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검토	
70차	13. 7. 22.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71차	13. 8. 19.	■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72차	13. 9. 2.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미해결쟁범 검토	
73차	13. 9. 30.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74차	13. 10. 15.	■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차 수	일 시	안 건	
75차	13. 11. 4.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76차	13. 11. 18.	■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77차	13. 12. 2.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78차	14. 1. 6.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79차	14. 3. 17.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다. 공청회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2014. 2. 17.)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라. 관계기관 의견조회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안에 대한 의견조회

4. 향후 추진 일정

- 연간보고서 초안 완성 : 2014. 7. 초순
- 견본 제작 : 2014. 7. 중순

○ 교정 작업 : 2014. 7. 하순

○ 인쇄 의뢰 및 제작 : 2014. 8. 초순

○ 국회 보고 및 배부 : 2014. 8. 중순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4. 3.	21.	○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참작 동기 살인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 형량과 성범죄 양형기준 중 13세 미만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 행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형량이 비슷하여 각 범죄의 위법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 개진			
2	2014. 3.	24.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기간 환산 시 1일 노역의 대가를 서민에게 부과되는 것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산정하도록 양형 규정 제정 요청			
3	2014. 3.	31.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체포·감금치사, 유기·학대치사, 아동학대치사 등 유형의 권고형량이 낮다는 의견 개진			
4	2014. 4.	7.	○ 아동학대 관련 양형기준 강화 요청			
5	2014. 4.	11.	○ 살인범죄 등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 내용 및 사형 미집행에 대한 의견 개진			
6	2014. 4.	11.	○ 아동 대상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 여 형법상 최고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양형기 준 및 선고형량을 명기하여 상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개진			
7	2014. 4.		○ 아동학대사건의 선고형량에 대한 불만 제기 및 아동학대, 성범죄 등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 설 정 또는 양형기준 강화 요청			
8	2014. 4.	27.	○ 이익의 도모를 위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			

여 현행 자유형, 재산형 등의 형벌과는 별개로 3년간 2배의 세금 또는 10년간 수입의 절반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형태의 자본결합적 양형제도를 도입하거나, 위 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범죄자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형벌의 일반예 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 1, 2, 3, 4, 5, 6,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으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이익의 도모를 위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 다만,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행 법령의 형벌규정과는 별개로 3년간 2배의 세금 또는 10년간 수입의 절반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

2. 서면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접수의견

순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	------	------

1 2014. 3. 10.	 ○ 뇌물 및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보다 낮아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질의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뇌물 및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개정 요청 ○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 결과가 현행 양형규정에 부합하는지 질의 ○ 뇌물 및 횡령범죄 양형기준에서 무기징역형을 권고하지않는 이유 질의 ○ 뇌물 및 횡령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양형위원회의에서
	특가법이 정한 형량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가 있었는지 질의 ○ 뇌물 및 횡령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외압에 의해 권고 형량을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질의
	○ 양형기준 설정 업무에 대한 본분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지, 질의인의 요구대로 양형기준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 지 질의
	○ 살인, 살인미수, 낙태, 흉기소지, 협박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대책 마련 요청
2 2014. 3. 18.	○ 흉기(칼, 총)나 불을 이용한 살인(미수)범죄의 경우 또는 염산을 이용한 상해범죄의 경우 그 범행 도구를 판매한 판매점 및 가해자가 거주하는 가정집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시행 요청
3 2014. 3. 26.	○ 확정된 형사사건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4 2014. 4. 7.	○ 부패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재산 몰수 형벌 도입 요청
5 2014. 4. 22.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의 견 개진
6 2014. 5. 8.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의 견 개진
7 2014. 5. 9.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의

		견 개진
	2014. 5. 9.	○ 뇌물범죄 및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특정
Q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0		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보다 낮으므로 위 양형기준
		은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의견 개진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일정 액수를 횡령 또는 배임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결과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개별 형사사건의 재판결과가 양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양형기준 설정 업무에 대한 본분을 다했다고 자부하는지, 질의인의 요구대로 양형기준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뇌물 및 횡령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전문위원 회의 및 공청회 이외에 양형위원 회의에서 특가법이 정한 형량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양형위원회는 형법 및 특별법을 포함한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뇌물 및 횡령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에도 형법 및 특별법 등 법정형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뇌물 및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보다 낮아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뇌물 및 횡령·배임범죄양형기준을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는 귀하의의견과 뇌물 및 횡령범죄 양형기준에서 무기징역형을 권고하지 않는이유, 뇌물 및 횡령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외압에 의해 권고 형량을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해 드린 2012. 1.

25.자, 4. 30.자, 6. 12.자, 2014. 3. 14.자 회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흉기(칼, 총)나 불을 이용한 살인(미수)범죄의 경우 또는 염산을 이용한 상해범죄의 경우 그 범행 도구를 판매한 판매점 및 가해자가 거주하는 가정집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살인, 살인미수, 흉기소지, 협박, 낙태범죄 등의 처벌 및 재범방지대 책을 강화해 달라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이미 '양형위원회에 바 란다' 코너 등을 통해 수 차례 제기하신 동일한 질의에 대한 각 회 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3,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신 사항과 같은 개별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 또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한 재산몰수형제도 도입 등 법률 제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
- 5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법정형, 유사범죄 양형기준 과의 형평성, 과거 선고형량에 관한 통계, 규범적 조정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개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국민 일반의 다양한 의견이 양형기준 설 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귀 모임의 의견 은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 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6, 7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으로 회신
- 8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향후 뇌물범죄 및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수정 작업이 진행 될 경우 양형위원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관계기관 의견조 회 결과 및 공청회 결과 검토 시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별지1]

■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	성 명	김 용 대 (金 容 大)
	1	생년월일	1960. 12. 20.생 (53세)
	į	출 생 지	경북 칠곡
	-	소 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	i	출신학교	대구 심인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1200		주	요 경 력
▶ 1983			서울대 법학과 졸업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88	_	1991	육군법무관
▶ 1991	_	199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3 - 1995 서울민사지방법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 - 1997		199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 1997 - 1998		1998	부산고등법원 판사
▶ 1998	1998 - 199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9	_	- 200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0	_	2003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3	_	2004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_	2006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_	2008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	_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	▶ 2011 − 201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	_	2013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3	_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신임 수석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이 재 권 (李 在 權)		
	생년월일	1969년 2월 14일생 , 46세		
3	출 생 지	제주		
2	직 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ζ	학 력		
O 1987.	제주제일고등	학교 졸업		
O 1992.	서울대학교 법	 학과 졸업		
	주	^도 요 경 력		
O 1991.	제33회 사법시	기험 합격		
O 1994.	사법연수원 저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O 1994.	군법무관	군법무관		
O 1997.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		
O 1999.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O 2001.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O 2004.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판사		
O 2005.	법원행정처 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O 2006.	법원행정처 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O 2007.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O 2009.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O 2010.	대법원장 비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부장판사)		
O 2012.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O 2014.	서울중앙지방	법원 부장판사		

■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서 대	하 내 치 /보 푹 宔\		
	성 명 	황 병 헌 (黃 秉 憲)		
1001	생년월일	1970년 11월 2일생 , 45세		
3	출 생 지	출 생 지 서울		
	직 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ō	부 력		
O 1989.	서울 경희고등	등학교 졸업		
O 1994.	서울대학교 시	·법학과 졸업		
	주	요 경 력		
O 1993.	제35회 사법/	시험 합격		
O 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O 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O 2001.	○ 200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O 2003.	○ 2003. 제주지방법원 판사			
○ 2004.	○ 200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판사			
○ 2006.	○ 2006. 수원지방법원 판사			
O 2008.	서울고등법원	판사		
O 2010.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O 2011.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O 2012.	사법연수원 교수			
O 20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별지2]

<세부범죄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범죄군	,	세부죄명 및 적용법조	조사 대상사건	조사 완료건수
		강요	47	44
		 강제집행면탈	200(20)	196
권리행사방해범		권리행사방해	200(11)	185
죄		폭처법(공동강요)	62	49
	폭	처법(집단.흉기등강요)	23	20
		전체	532(31)	494
		44조 1항 1호	89	81
		44조 1항1의 2호	83	1
	게임산	44조 1항 2호, 32조 1항 1, 4호	200(21)	216
	업법위 반	44조 1항 2호, 32조 1항 7호	200(20)	206
게임물관련범죄		45조 2호	14	11
		45조 4호	200(20)	197
	사행행 위법위 반	30조 1항 1호	200(21)	185
		30조 1항 2호	6	5
		30조 2항 1호	8	7
	전체		1,000(82)	909
	상습장물보관		0	1
		상습장물취득	40	2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131	115
		장물보관	26	23
		장물알선	119	105
장물·손괴범죄		장물양도	6	7
		장물운반	28	22
		장물취득	200(24)	182
		재물손괴	187	175
		특가법(장물)	157	112
		특수재물손괴	0	1

범죄군	세부죄명 및 적용법조	조사	조사
		대상사건	완료건수
	폭처법(공동재물손괴등)	21	13
	폭처법(상습재물손괴등)	16	11
	폭처법(야간집단·흉기등손괴)	0	1
	폭처법(집단.흉기등손괴)	61	31
	폭처법(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200(25)	237
	전체	1,192(49)	1,062
신용·업무·경매 에관한범 죄	경매방해	184	154
	신용훼손	2	1
	업무방해	300(14)	247
	입찰방해	55	43
	전체	541(14)	445
전체		3,265(176)	2,910

※ 1. 조사대상건수

각 범죄별 표본 조사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위의 표에서 ()안의 수치는 외서로 사건 기록의 대출, 폐기 등을 대비하여 추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 킨 건수임

2. 조사완료건수:

대표죄명 변경, 타기관 대출·송부, 미확정 등의 사유로 미조사된 355건을 제외한 실제조사건수이며, 조사완료율은 89.1%임